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연 철 흠 의원 등 8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10월 5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10월 6일

3. 제안이유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유지기준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5. 검토내용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공기질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
  - 안 제6조는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9. 15. ~ '20. 9. 30.)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용”하여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광역단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산화탄소, 폼알데이드, 일산화탄소 등 3개 항목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지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충북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2 “나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평균오염도 측정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나,  
 기온, 측정시기, 대상별, 장소별, 실내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적의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위 사항을 포함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미세먼지 (PM-10) (µg/m³)	미세먼지 (PM-2.5) (µg/m³)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µg/m³)	총부유세균 (CFU/m³)	일산화탄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법 기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조례 기준		100 이하	50 이하	9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법 기준		75 이하	35 이하	1,0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10 이하
	조례 기준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다. 실내주차장	법 기준		20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5 이하
	조례 기준		200 이하	-	900 이하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등	법 기준		200 이하	-	-	-	-	-
	조례 기준		200 이하	-	-	-	-	-